

의안번호	제 54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3월 28 일 (제 258 회)
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6년 11월 13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5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11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항공사업자는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이라 6월~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 분기점인 60~70% 탑승율 보전을 통한 국제항공노선 취항 유도
-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국내·외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
  -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에 따른 결손금
  -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,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지원내용
  -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국제항공 노선의 평균 탑승율 및 화물량이 항공 사업자의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경우에 결손금 또는 공항시설 사용료의 일부
  - 지원기준·방법·기간 등은 피지원자와 협의·결정할 수 있음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“해당없음”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『항공운송사업진흥법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항공사업자”라 함은 『항공운송사업진흥법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『항공법』 제2조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『항공법시행규칙』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)**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.

1.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
2.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
3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지원규모 등)** ①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율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·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.

**제5조(도비 지원)**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, 시·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 신청)** ①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(별지 1호서식)를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
2.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
3. 운항기간 중 탑승(탑재) 현황
4.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(톤)수
5. 운항 사실 기록부
6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
7.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

**제7조(지원금 교부)**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한다.

②제5조 규정에 의한 도비지원은 『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』의 규정에 준한다.

**제8조(지원금의 반환)**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주의 의무)**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감독)**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준용)** 기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『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』를 준용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				
신청인	대표자		생년월일	
	항공사명		사업자번호	
	소재지	(☎ )		
신청금액	일금 (₩ )			
산출내역				
운항노선				
여객운임		운항기종 및 좌석수		
운항기간		운항회수		
탑승현황	공급좌석 수			
	탑승객 수			
충청북도청주국제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(대표자) 소속 성명 (인)				
거래은행		예금주		계좌번호
첨부서류 1.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.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. 운항기간 중 탑승(탑재) 현황 4.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(톤)수 5. 운항 사실 기록부 6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.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				

# 관계 법령 발췌

## <항공운송사업진흥법>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1991.12.14>

1. "항공운송사업"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 (항공운송사업의 조성) ①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항공사업자"라 한다)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.19>

1.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
2. 항공기의 조종사,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
3. 전쟁·내란·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

②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. 제8조에서 같다)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2.1.19>

제8조 (목적외 사용금지 및 감독) ①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당해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
<개정 1997.12.13, 2002.1.19>

## <항 공 법>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<개정 1997.12.13, 1999.2.5, 2001.9.12, 2002.2.4, 2003.12.30, 2005.11.8>

26. "항공운송사업"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.
27. "정기항공운송사업"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 사업을 말한다.

## <항공법 시행규칙>

제15조 (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) 법 제2조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지점간운송사업 :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
2. 관광비행사업 :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
3. 전세운송사업 :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